

# 인도네시아의 特許制度

金 正 容  
(特許局 登錄課 事務官)



## ① 制定運用의 概要

인도네시아에는 特許法, 意匠法은 없고 工業所有權으로서는 1961年에 商標法(Undong-Undang Merek)만이 制定, 施行되고 있다.

그동안 特許局에서 的장법이나 著作權法 등의 제정을 여러번 推進한 바 있으나 國內事情으로 오늘날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唯一하게 상표법의 운용에만 力點을 두어 왔다.

한편 現地의 商標 印刷技術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實物의 模造品을 容易하게 判別할 수가 있어 內外商標의 模倣이나 規制, 그리고 이에 대한 對策이 없었다.

그러나 中共製品으로 보여지는 模倣商品의 激增은 東南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친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는데 비추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이러한 問題가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는 趨勢에 있다.

이러한 現狀을 考慮하여 이 나라에서는 先使用主義의 상표권을 採用함으로써 自己의 상표를 適當히 宣傳하여 선사용의 事實을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만의 事例가 아니고 東南亞의 어느 나라에서도 항용 찾아볼 수 있는 일이며 그 目的은 商標使用的 사실을 立證하는 明確한 證據를 確實히 하는 데 있다.

一般的으로 無斷登錄人은 無分別한 實利만을 생각하여 出願하고 登錄을 取得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商標權侵害로 因해 法院에 提訴당한다든지 紛爭事件의 處理 등에 關心과 期待를 갖지 않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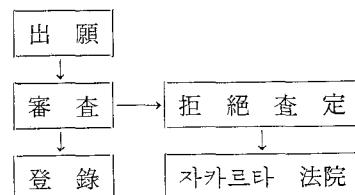
분쟁사건의 判決은 主文에만 이유를 記載하고 그 處理가 長期化될 때 判決文은 當事者에게 送達되지 않을 때가 많아 이러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法院에 判決文 複寫를 强硬히 請求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商標公報가 없어 無斷登錄事例를 早期發見하기가 어렵고 특히 家庭用 藥品이나 纖維製品 등에 상표 및 의장의 모방이甚하여 이에 대한 監視 및 調查管理를 疏忽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外國인이 特別히 留意해야 할 것은 期間이 滿了된 후에 當該 著名商標와 類似한 상표를 現地人이 출원하여 商標權을 獲得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표의 更新期間을 넘기지 않을 것과 이 나라에서는 模倣醫藥品에 관한 團束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에 유의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의 商標登錄 節次



法務省 特許局; Ministry of Justice (Direktorat patent) (Djalan Sogara 17, Djakarta)

## ② 商標制度의 特徵

이 나라 商標法은 最先使用者登錄主義(先使用主義)와 審査主義에 基本을 두고 있으며 異議申請制度가 없어 最先出願者は 反證이 없는 限 최선사용자로 認定하게 된다.

商標登錄後 6個月 以內에 사용을 開始하지 않았을 때, 또는 3年 以上 繼續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이 取消되는 制度, 즉 「不使用에 의한 取消審判制度」가 있으며 또한 商標權讓渡는 반드시 營業과 같이 移轉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나라는 파리同盟條約에 加入하고 있으므로 商標出願에 있어서는 優先權을 主張할 수가 있는바 상표법의 特徵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商標權侵害罪는 刑法에서 規定하고 있다.  
② 拒絕査定不服審判 또는 登錄無効審判은 자카르타地方法院에 請求할 수가 있다.

③ 출원의 취소 또는 거절의 규정(상표법 제6조)에 의해 通知를 받았을 때 出願人에게 意見書 提出의 機會를 주지 않는다.

④ 商標關係事件에 있어서 事實審理에 대하여는 高等法院에 提訴할 수 없으나 法律解釋의 可否를 물을 경우에 한하여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다.

⑤ 判決은 主文뿐이며 理由는 記載되지 않는다. 또한 判決文은 가끔 當事者에게 送達되지 않을 때도 있어 이 경우는 법원에 寫本를 청구할 수가 있다.

商標制度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 1. 最先使用에의 權利

(가) 자기상표를 他人의 상표와 区別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나 그 權利는 인도네시아 内에서는 最初에 사용한 사람에게 許與되며 商標使用權利는 상표를 付着한 全種의 상품에 미치게 되고 최선 사용을 中斷하더라도 未使用日에서 5年間 當該權利는 有效하다.

### (나) 登錄出願의 節次(第4條)

不登錄事由(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최초로 출원한 사람은 反證이 提示되지 않는 한 當該商標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으로 看做한다. 出願人은 前述한 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상표를 붙인 상품을 全國博覽會에 出品하고 있는期間中에 特許局에 출원했을 때에도 출원인은 이 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람으로 본다.

단, 상표의 등록출원은 박람회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條件으로 되어 있다.

### 2. 登錄出願의 節次

(가) 특허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語로 된 正·副本 2通의 書類를 提出함과 아울러 다음의 것을 添付해야 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見本 또는 상품에 관한 說明書

② 상표의 印版 1個

③ 상표견본 10通

(나) 등록출원할 때는 다음의 料金을納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出願手數料; 300 Rupia(루피아)

② 審查料는 商品類別表에 나타난 區分의 상품에; 200루피아

③ 登錄料; 500루피아

(다) 상표의 등록출원이 거절되었을 때는 전술의 등록료는返還되나 出願料 및 심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라) 출원의 조건, 상표부사의 인판 및 각 상표에 대한 심사료의 額數에 관한 追加規定은 특허국에서 定한다.

(마) 출원인으로부터 委任狀에 의해 상표출원에 관한一切의 權利를 委任받은 사람도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가 있다.

### 3. 不登錄事由

(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道德 및 公序良俗에 違反되는 圖形이나 印刷文字는 商標로 登錄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출원할 수가 없다.

①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數字 또는 文字만으로서 이루어진 것 또는 상품을 生產하는 方法, 때나 場所, 상품의 分量, 形態, 目的, 體積, 價格, 重量을 表示한 것)

② 國旗, 國家의 象徵, 紋章, 姓名, 國際的인會社의 略字 또는 이것들에 유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

③ 國家機關의 證明이나 認證用의 도장

④ 拒絕理由通知

상표가 節次上에서 不登錄事由로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허국은 출원인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야만 할 要旨나 特허국이 決定한 기간 안에 출원을 取下해야 할 要旨를 書面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원인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출원을 취하하지 않을 때는 상표의 등록출원은 거절된다.

상표의 등록출원이 거절된 者는 本人 또는 代理人이 署名한 審判請求書를 자카르타地方法院에 제출할 수 있으며 거절이 유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個月 以內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登 錄

등록출원된 상표는 拒絕理由通知 및 拒絕查定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특허국이 直接 備置한 一般登録簿에 기재함과 아울러 상표의 登錄年月日, 登錄番號 및 출원이 受理된 연월일을 기재함으로써 効力を 發生하게 된다. 등록公告는 인도네시아 官報에 揭載된다.

#### 5. 無効審判

(가) 등록된 상표가 이미 同種의 상품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된 상표에 타인의姓名 또는 상표가 付着되었을 경우에는 상표의 登錄無効를 청구하는 無効審判請求를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다.

다만 이 請求書는 請求人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되 適法의 手段을 侵害해서는 아니된다. 이 청구는 등록公告가 있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무효심판의 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가 법원의 確定判決에 의한 경우는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라도 可能하다.

(다) 檢察官은 다시 어여한 상표를 불인 상품이 출원인이 제출한 상품견본 또는 說明書와一致하지 않을 때는 등록무효를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 6. 判決確定의 効果

(가) 자카르타지방법원의 판결은 書記官에 의하여 특허국에 통지된다.

(나) 특허국은 자카르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 상표의 등록을 하거나 상표가 기재된 一般登録簿의 適當한 欄에 無効에 관하여 기재한다.

(다) 출원인이 등록료(500Rupia)를 납입했을 때 특허국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3개월 이내에 이러한 등록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상표의 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7. 権利의 消滅

(가) 商標權은 다음의 경우에 消滅된다.

① 登錄名義人の 청구에 따라 등록이 抹消되었을 때

② 商標使用者로서 등록된 사람이 등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를 사용 안했음을 自認했을 때나 裁判官이 未使用的 판결을 내렸을 때

③ 상표를 3년 또는 그 이상의期間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상표권리자가 자인했을 때, 재판판이 未使用的 판결을 내렸을 때

④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이 經過한 후 (다만 이 기간 내에 등록이 更新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같은 기간이 經過하기 以前에 개신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함)

⑤ 등록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된 후

(나) 上述한 이유에 따른 상표권의 소멸은 일반등록부의 該當欄에 기재하고 그 이유도 明示하게 된다.

#### 8. 更新登録

(가) 상표의 등록을 개신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상표권자가 登錄出願節次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나) 특허국이 상표의 등록을 개신하는 것을 인정했을 경우 商標登録更新願書에는 更新年月日 및 更新番號를 記入해야만 한다.

(다) 특허국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일반등록의 적당한 날에 연월일 및 번호를 기재하여 상표의 등록을 개신한다.

(라) 상표등록개신의 効力發生은 更新願書에 개신년월일 및 개신번호를 기입한 날로부터이며 이런 연월일도 일반등록부에 기입된다. 또한 개신원서의複寫는 直接 出願人에 송달된다.

(마) 상표개신등록에 있어서도 출원인의姓名住所 및 상표가 붙은 상품에 관한 詳細한 것을 관보에 게재한다.

(바) 특허국은 不登録事由 또는 거절이유통지 규정에 適用되었을 때 상표의 개신등록을 거절할 수가 있다.

#### 9. 商標權의 移轉

(가) 등록된 상표의 권리가 타인에 讓渡하는 것은 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生産 또는 去來하고 있는 會社가 讓受人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約款의 拔掉를 특허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